#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296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 태 료 : 5,000,000원

2.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이첩('20.9.2.)된 사안의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20.9.10.~'20.9.15.)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5. 11. 개원 당시부터 병원 대기실 및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 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 오다가, 2016.11.21.에 탈의실에 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민원인의 신고('20.8.26.) 후 탈의실에 설치된 기기를 철거('20.8.27.)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탈의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빈발하는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고, 법에 대한 무지로 법을 위반하였으나, 즉시 시정 완료(철거)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21.1.25.)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
--------------------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1,000	2,000	4,0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괴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1,0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5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라태료 금	액 (단위:	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항	제75조제1항제3호	1,000	i po	△500	5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원장 윤종인 (서명)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고성학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서종식 (서명)

위 원 염흥열 (서명)

위 원 이희정 (서명)

위 원 지성우 (서명)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297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전라북도 익산시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 태 료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익산경찰서에서 이첩('21.3.24.)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0.11.부터 공개된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 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2대를 안내판 없이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9. 총 3회에 걸쳐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이후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피심인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괴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규정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감경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200만원을 부과한다.

####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형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	프	2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u> ک</u>	운 종	인	(서	명)
	_	_				,	-,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298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 용산구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울시 강서구 신축 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함)하는 사업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4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0년 10월부터 시설안전,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신축공사 현장 내·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7대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신고 당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CCTV설치 계약서에 안내판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CCTV 설치시점 ('20.10월)에 안내판은 부착하였으나 관리미흡으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하였으나, 안내판 설치 사진 등은 확인되지 않고 특히 해당 지역의 '20.10월, '21.1월, '21.4월 로드뷰(네이버) 사진 조사결과 안내판은 확인되지 않았음. 또한 '21.4월 신고 당시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음

피심인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21.5월 법에 정한 필수 기재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 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1.16.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CCTV 안내판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며, 안내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재설치하여 안내판 부착 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는 등 적극적인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의 노력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워을 적용하다.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 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고,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 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기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원장 윤종인 (서 대
--------------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299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경기도 화성시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 태 료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경기도 화성시 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사업자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익신고(2020공익1570)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0.8.13.~8.18.)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0.5.26.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소재 모델하우스 내·외부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총 12대)를 안내판 없이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20.8.14.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법 위반상태를 시정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제1호), 촬영 범위 및시간(제2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제4호)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9.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관련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사실조사과정에서 법정 양식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를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21.9.15.)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 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사소한 부주의에 인한 것으로 추가피해 발생이 없으며,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였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각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	라태료 금	액 (단위:	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 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75조제4항제3호	200	s=: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0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 강남구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울시 강남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필라테스 교습소를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6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9년 3월부터 수강생 안전,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실내운동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4대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신고 당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필라테스 교습소 출입구 및 내부 운동공간은 누구나 등록 상담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하고 운동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임

피심인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21.6월 법에 정한 필수 기재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 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0.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반사항 인지 즉시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해당 CCTV는 수강생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가장 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목적이 없었고 자진 시정 등의노력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고,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인 점,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75조제4항제3호	200	_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윤	종	인	(서	명)
---	---	---	---	---	---	----	----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1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 태 료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울시 광진구 운영자이다. 사업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이첩('21.4.1.)된 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021.4.7.~5.3.)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2.20.~'21.2.23. 건물의 철거 작업을 하면서 철거공사 현장에 방범 및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3대를 안내판 없이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1.2.23. 건물 철거 완료 후 운영 중단하였고, '21.4.9. 완전 철거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9.1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으며,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 완료하였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	△100	100	

되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원장 윤종인 (서명)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고성학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서종식 (서명)

위 원 염홍열 (서명)

위 원 이희정 (서명)

위 원 지성우 (서명)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2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 태 료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인천 남동구 소재 일반음식점 사업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21.4.24.)된 사건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2021.5.3.~6.21.)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1.3.18.부터 방범 및 시설물 안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영업장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2대를 안내판 없이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21.6.22. 법정 안내판을 부착하여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제1호), 촬영 범위 및 시간(제2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0.1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법 제75조	200	400	800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3호	200	400	0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괴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으며,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 완료하였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	라태료 금	액 (단위:	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 <del>-</del>	△100	100

<sup>□</sup>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윤	종	인	(서	명)
---	---	---	---	---	---	----	----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3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 태 료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일반음식점 사업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21.5.24.)된 사건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21.6.4.~7.14.)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8.7.3.부터 방범 및 시설물 안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영업장 내·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8대를 설치·운영하면서, 법정 양식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21.7.5. 법정 안내판을 부착하여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제1호), 촬영 범위 및시간(제2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0.1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49 ± +47 ± / 197 ±	로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
----------------------	----------------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마르를 보고 하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법 제75조	200	400	800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3호	200	400	0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 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으며,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 완료하였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의 근거		라태료 금	액 (단위:	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원장 윤종인 (서명	71		25	亚	8	윈	(서	뭥
-------------	----	--	----	---	---	---	----	---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4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부산시 진구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부산 진구

거주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0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0년경 부터 시설안전,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거주지 주택 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4대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안내판을 설치한 흔적은 있으나, 안내판이 오손되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일정기간 유지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20.11월 법에 맞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 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안내판이 오손되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일정기간 유지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2.2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법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설치하여 시정완료 하였음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다.

			금액(단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괴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고,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 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	액 (단위:	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75조제4항제3호	200	2.00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윤	종	인	(서	명)
---	---	---	---	---	---	----	----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5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경기도 부천시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 태 료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소재 건물 소유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천시청에서 이첩('20.9.9.)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20.11.16.~'21.4.9.)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0.3.경 방범 및 시설물 안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본인 소유 건물 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2대를 안내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20.11.24.~25. 법정 안내판을 부착하여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9.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 완료하였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라태료 금	액 (단위:	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윤	종	인		(서	명)
---	---	---	---	---	---	--	----	----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6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 태 료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이첩('21.1.21.)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2021.2.2.~2.15.)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2.11.~12.17. 방범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건물 1층 옥외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 1대를 안내판 없이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12.17.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철거하여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9.1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법 규정을 몰라 안내판을 부착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CCTV를 즉시 철거한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21.9.17.)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법 제75조	200	400	800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3호	200	400	0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괴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개인으로서 해당 행위가 위법인지 모르고 한 행위이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가피해 발생이 없으며,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각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7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

울산시 남구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주택 외부인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4.5.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이첩한 건과 관련하여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021.4.12.~4.22.)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0.6월부터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주택 외부에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1대)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21.4.20. 주택 대문 옆 외벽에 법정 고지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9.1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장애6급인 독거노인으로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며,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금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ines: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윤	종	인	(서	명)
---	---	---	---	---	---	----	----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8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

경기도 수원시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빌라 외부인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3.30.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이첩한 건과 관련하여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021.4.8.~7.19.)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1.3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빌라 내·외부에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총 4대)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안내판을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21.6월 CCTV의 작동을 중단하고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sup>제1호</sup>설치 목적 및 장소, <sup>제2호</sup>촬영 범위 및 시간, <sup>제3호</sup>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sup>제4호</sup>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9.1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	료의	부과기	준	2	개	별기	준	>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며,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금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2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09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

서울 중구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울 중구

소유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5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1년 2월부터 시설안전,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소유 주택 내·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8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21년 6월 16일 주택 건물 외벽 2곳에 법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법 위반 상태를 시정 완료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 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1.16.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안내판 미부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설치하여 시정완료 하였음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괴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고,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 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기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	제75조제4항제3호	200	-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允	종	인	(서	명)
---	---	---	---	---	---	----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고성학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서종식 (서명)

위 원 염흥열 (서명)

위 원 이희정 (서명)

위 원 지성우 (서명)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10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

전라남도 진도군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기기운영자이다.

거주자로 영상정보처리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7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8년경부터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집 앞마당과 주 출입구 옆 외부 전봇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2대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신고 당시 안내 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2018년경 최초 CCTV 설치 당시 주출입구 옆에 'CCTV 작동중' 안내판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함

피심인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21.7월 법에 정한 필수 기재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 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1.1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안내판은 즉시 설치 완료하였으며, 해당 CCTV는 텃밭 채소 도난 사건 피해를 입은 후 범죄 예방 목적에 설치하였으며 자진 시정 등의 노력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법 제75조	200	400	900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3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고,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 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75조제4항제3호	200	-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	원	장	允	종	인	(서	명)
---	---	---	---	---	---	----	----

#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20-311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생년월일 :

경기 수원시

의결연월일 2021. 12. 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경기도 수원시 운영자이다. 거주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

###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이첩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0년 4월부터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거주지 현관문 앞 골목길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20년 10월 법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법 위반상태를 시정 완료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sup>(제1호)</sup>, 촬영 범위 및 시간<sup>(제2호)</sup>,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sup>(제3호)</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제4호)</sup>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1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법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설치하여 시정완료 하였음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거.	법 제25조제4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제3호	200	400	800

### 나. 가중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괴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감경

피심인은 해당 행위가 위법인지 모르고 한 행위이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고,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한 점,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기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75조제4항제3호	200	-	△100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대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1년 12월 8일

위원	장	윤	종	인	(서	명)
----	---	---	---	---	----	----